

2020년 클린사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

【 경북동부지사 】

- ①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, ②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
 ③ 일본 수출규제 영향 사업장(AA등급)은 점수와 관계없이 최우선선정

선 정 항 목	항목별 가중치	비고
■ 공통적용 항목	65점	
①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	15점	
② 사고사망 재해다발 위험업종(소업종)	15점	
③ 지역별 재해다발 위험업종(소업종)	10점	단, 재해율 순위 10개 전 소업종 단위로 1점씩 차감
④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	10점	
⑤ 취약계층* 근로자 고용 사업장(근로자 1명당 2점) * 장년근로자(만55세이상), 장애인, 외국인, 청년(15~29세이하)	10점	
⑥ 크레인(정격하중 2톤이상), 지게차(좌·입식) • 해당설비 사진제출(크레인 정격하중 확인가능 사진) 시 인정	5점	
■ 자율활동 우수항목	15점	
⑦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 *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, 강소기업, 일학습병행제로 인정 받은 사업장	10점	
⑧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	5점	'19~'20년 참여업체
■ 지역별 자율 항목(2개 이상 항목으로 구성 항목 당 10점 이내)	20점	일선기관별로 추가구성
⑨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	10점	선정 시까지 인정유지
⑩ 최근 3년이내 재해(끼임, 추락, 질식) 발생사업장 또는 최근 5년 이내 사고사망재해 발생사업장	10점	재해발생일 기준
■ 가점항목(사망사고 감소사업, 고용·산업위기지역)	+20점	
⑪ 사망사고 감소 사업(패트롤 등) 참여 사업장	+10점	신설 ('19~'20년 기술지도 사업장)
⑫ 고용·산업위기 지역 • '19년~'20년 고용·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	+10점	
계	100점	(단, 100점 초과시 100점 적용)

※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가점항목(⑪→⑫)→공통항목(①→⑥)→우수항목(⑦→⑧)→자율항목 (⑨→⑩~)순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

※ 당해연도 융자금 지급 사업장은 당해연도 클린신청 접수 불가

2020년 용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

【 경북동부지사 】

①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, ②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
③ 일본 수출규제 영향 사업장(A등급이상)은 점수와 관계없이 최우선선정

선 정 항 목	항목별 가중치	비 고
■ 공통적용 항목	80점	
① 사망사고 감소 사업 참여 사업장(패트롤 등)	1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설) '19~'20년 기술지도 사업장
② 투자공정의 유해·위험도가 높은 사업장	15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해율 통계: 지역별 300인 미만 확정통계 사용 • 소업종기준 재해율 상위 10개 업종 선정하여 배점
③ 고용노동부·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·점검, 기술지원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	15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
④ 고용증가 사업장	5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식통계 기준으로 전년도 해당월 근로자수 비교
⑤ 산재장해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(해당 근로자 1명당 2점, 최대 5명인정) • 근로계약서, 산재장해보상금 지급확인서 등 확인	1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재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수급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
⑥ 이사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	1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노사문화우수기업 강소기업인정 일학습병행제(인정유효기간 내) 등 우수인정사업장 • 인정서 및 대상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인정
⑦ 법 제84조 및 제89조와 영 제74조부터 제77조 까지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의 구입 또는 안전인증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장	10점	
⑧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	5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19~'20년 공생협력 참여 협력업체
■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 항목	20점	
⑨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	1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정 시까지 인정유지
⑩ 최근 3년이내 재해(끼임, 추락, 질식) 발생 사업장 또는 최근 5년 이내 사고사망재해 발생사업장	1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해발생일 기준
계	100점	

※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공통항목 순번→자율항목 순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

※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당해연도 용자신청 접수 불가

※ 전년도 및 당해 연도 결정 후 취소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우선순위 결정시 최후 순위로 설정